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2016. 1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2
1. 추진경과 및 현황	2
2. 문제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4
III .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6
IV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7
1. 위탁료 산출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7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3
3.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21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28
V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34
※ 불입 1 ~ 5 주차장 조례 개선 표준안 등	36

I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투명한 사회)
- ◆ 2016년도 국민권익 정부 3.0 과제(투명한 정부)

□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 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¹⁾ 제도를 도입·운영

- 지자체의 경우 1999년부터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간 위탁사무수 및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수는 '15년 9,556건으로 추정(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예산 규모는 ('05년) 5조 1,647억원 → ('14년) 12조 2,777억원으로 증가(행자부 재정고)

□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자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여 부패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위탁 계약, 위탁료 산출, 관리·감독 분야에서 부패유발 및 재정누수 요인이 내재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하지 못하고, 상인회는 공영 주차장 위탁운업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뉴스, '16. 2월]

⇒ 이에,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1)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Ⅱ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1 추진경과 및 현황

□ 추진경과

- '16.1~3월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법령조사
- '16.4~6월 공영주차장 관련 법령 및 현장 실태 조사
- '16.7~8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련 조례 전수조사(서면조사)
- '16.8~9월 법률 및 관계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 '16. 10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마련

□ 실태조사 개요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16.4월 ~ '16.6월 중
- 대상기관 : 3개 지자체(광역시 1, 기초 2)
- 조사방식 : 자료 조사 및 현장 면담(공영주차장 소관 부서 및 지방공사공단 등 담당자)

○ 서면조사

- 조사기간 : '16.7.18. ~ '16.8.19.(1개월간)
 - ※ 조사통보 및 지자체 자료 제출(7.18.~7. 29.) → 제출자료 보완 및 통계 작업(8.1.~8.19.)
- 대상기관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시 17, 기초 226)
- 조사방식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관련 조례 전수조사('15.12.31.기준)

□ 주차장 조례 및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15년 기준)

- 전국 243개(광역시 17, 기초 226) 지자체 중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235개(광역시 9, 기초 226)

⇒ 주차장 조례가 있는 23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또한, 230개(광역시 7, 기초 223) 지자체가 14,57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 중, 그 중 176개 지자체가 6,108개소를 위탁운영 중

<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지자체 현황 >

합 계 (단위: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7	1	1	1	1	-	-	-	1	1	-	-	-	-	-	-	1
기초	169	25	16	8	10	5	5	5	-	30	13	6	11	3	4	14	14
합계	176	26	17	9	11	5	5	5	1	31	13	6	11	4	4	14	14

- 위탁운영 중인 6,108개소 중 4,369개소(71.5%)는 지방공사·공단 직영, 1,256개소(20.6%)는 지자체에서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 483개소(7.9%)는 지방공사·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고 있음

※ 전체 723,238면 중 위탁 중인 주차면수는 368,108면임(50.9%)

< 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주체별 주차장 수 >

합 계 (단위:개소)	지자체 직영	위탁			
		소계	지자체 → 공사·공단(4,852)		지자체 → 민간
			공사·공단 직영	공사·공단 → 민간	
14,573	8,465	6,108	4,369	483	1,256

2 문제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 현장·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공영주차장 문제 파악

- (계약 및 절차) 수탁기관 선정, 갱신계약 및 평가 등
- (위탁료 산출) 위탁료 산출 여부, 산출 기준 및 방법 등
- (관리·감독)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제재 등

○ 관련 법령²⁾의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공영주차장 위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직적 분석
- 계약방법, 위탁료 산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평적 분석

법령 체계		주요 내용
법령	법 률 (주차장법)	· 주차장 정의,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위탁)관리 ·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자치 법규	주차장 조례	· 위탁의 근거, 선정방법, 계약, 위탁료 산출 · 위탁 기간, 관리감독, 계약 해지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계약방법,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공유재산 조례	·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계약 갱신 및 평가, 관리·감독

⇒ 부패영향평가는 공영주차장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
(필요시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조례 등 관련 사항과 연계하여 보완·정비)

2) 이하에서는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지칭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군)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는 「주차장 조례」, 「△△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조례」, 「△△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민간위탁 조례」라 함

참고 **공영주차장 위탁 제도 및 관련 법령**

■ 개념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 (설치) 소관 행정구역내에 지자체장이 특별회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 (운영)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직영 및 민간에 위탁 운영

※ 수탁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경쟁, 제한 및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 지자체의 장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접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자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5조)

■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소관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별 자치법규(조례)에 규정
 - (기본법)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 * 주차장 정의, 주차장 설치·관리, (위탁)운영 등
 - (자치법규) 주차장 조례, 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 조례 (지자체)
 - * 위탁근거, 위탁기간 및 연장, 위탁료 산출, 주차요금 징수방법, 지도·감독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지방공기업법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1. 위탁료 관련 규정의 객관성 미흡 1-1 위탁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위탁료 산출 1-2 임의의 기간에 위탁료를 산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1. 위탁료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1-1 위탁료 산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투명성 제고 1-2 정기적인 위탁료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2. 갱신계약의 투명성 미흡 2-1 갱신계약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2-2 자의적 평가방법 결정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도 저하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1 갱신계약의 평가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가능성 사전 차단 2-2 갱신계약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3. 부실한 관리·감독에 따른 위탁 관리 부실화 3-1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위탁관리 부실화 초래 3-2 구체적 제재규정 미흡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곤란	3.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3-1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의 실효성 확보 3-2 구체적인 제재규정 마련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4. 수의계약 근거 불명확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4-1 선정방법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시비 발생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4-1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혜 시비 해소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개선

IV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위탁료 산출 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관련 보도사례

- 지자체마다 위탁료 산정기준이 제각각이며, 일부 지자체는 휴일도 위탁료에 포함, 위탁료 산출기준에 영업일수, 영업시간 등을 적용하면 위탁료의 60%가 거품으로 풀이,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 마련 필요 [○○일보, '14.1월]
- △△의원은 “△△공사가 3년마다 재위탁하는 유료주차장 11곳은 수입이 최소 6억6천만~8억6천52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2013년 수탁단체들이 납부한 임대료는 5천300만원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인 계약방식 때문에 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일보, '15. 1월]

■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위탁료 산출을 위한 객관적 기준 부재 ▣ 조례 미제정 111개 지자체(47%)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중략)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비영리공익 법인의 경우	(생략)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	(생략)
마을공동체, 비영리자원 봉사단체	(생략)	군수가 정하는 금액	(생략)
기타의 경우	(생략)	입찰가격	(생략)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1 위탁료 산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투명성 제고

□ 현 황

-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47%(111개)가 위탁료 산출에 대한 규정 없이 위탁금액을 임의로 산출

- 지방공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4,369개소)은 수입과 지출이 100% 파악되고 있으나,
- 민간업체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1,739개소)은 25%(435개소)만이 수입과 지출이 파악되고 있고, 그 중 149개소만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위탁료가 산출되고 있음('16년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탁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124개(53%) 지자체 중, 15개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등과 같이 모호한 기준을 사용

- ○○시는 '15년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근거로 무상 위탁('16년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감면·면제규정이 있는 83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 또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표현을 사용

- 제0조(관리수탁금 금액 및 납부방법) ①생략 ②관리수탁금은 지역 및 사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군 조례)

□ 문제점

- 위탁료 산출기준이 없을 경우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위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산출될 개연성이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 과소 산출로 재정누수, 과다 산출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발생 우려
 - 또한, 감면비율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시장이 정할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

□ 개선방안

-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탁료 산출기준 명시
 - 예상수익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 제시
 - * (수입항목)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을 고려
 - * (지출항목)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 등 제경비 등을 고려
 - 자의적으로 표현한 감면사유와 비율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참고1] ○○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해당 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없을 시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 공시지가 금액에 ○○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비율 (50/1000)을 적용하는 방법
2. 해당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
단, 회전율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주차장 가동율{(주차면수×월정 금액×12월)÷(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365일)}을 곱한 것으로 한다.

— [참고2] 위탁료 산출 사례(○○군) —

- (산출방법) ○○군 현장조사와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분석
 - (현장조사) 년 2회(7일/회) 현지 출장하여 일정 시간(3~4시간)동안의 차량 대수 및 주차요금 등 수입금 파악·분석
 - (제출자료)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
 - ※ 수입근거(시간당 주차요금, 월정주차요금 등), 지출근거(인건비, 수탁료, 운영비, 사업장관리비, 제경비 등)
 - (결과분석) 현장 조사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주차장 여건과 관리 측면에서 위탁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
 - (위탁료) 평균치 수입금(현장조사 2회 및 제출자료의 평균) - 해당연도 지출액 × 비율
- ※ '16. 7월 권익위 서면조사 시 제출된 ○○군의 '2015년도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추진계획'을 기초로 재구성

1-2 정기적인 위탁료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현황)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위탁료 산출 주기를 명시한 지자체는 단 1개³⁾

- 지자체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1,256개소) 중, 52%(651개소)가 조례(주차장 조례 외 포함)에 근거 없이 매년 위탁료 산출

□ (문제점) 위탁료 산출 주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부실한 위탁료 산출로 재정누수 또는 수탁기관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위탁기관이 근거규정 없이 임의의 기간에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에 저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 소지가 있음

* 위탁료를 매년 산출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인 수입·지출 파악이 어렵고, 수입·지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위탁료가 산출될 우려

□ (개선방안) 위탁료 산출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위탁료를 매년 산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절한 위탁료가 책정되도록 개선

[참고]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③ (생략)
-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 종략 -----,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3) 매 회계연도 마다 위탁료 산출

1-3 주차장 조례 [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분</th><th>선정 방법</th><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th>납부 방법</th></tr><tr><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td><td>(생략)</td><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td>(생략)</td></tr><tr><td>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td><td>(생략)</td><td>계약금액</td><td>(생략)</td></tr></table>	구분	선정 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 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생략)	시장이 정하는 금액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생략)	계약금액	(생략)	제00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0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개월마다 ○○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구분	선정 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 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생략)	시장이 정하는 금액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생략)	계약금액	(생략)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이하 ‘개선안(예시)’도 같음]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관련 보도사례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뉴스, '16. 2월]

■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갱신계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부재

■ 조례 미제정 181개 지자체(77%)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⑤ (생략)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1 갱신계약 시 평가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가능성 사전 차단

□ 현 황

- 갱신계약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등 평가근거가 있는 지자체 23%(54개)

<갱신계약 시 평가규정 운영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54, 23%)			
		주차장 조례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조례	기타
235	181(77%)	1	21	30	2

- '10년~'15년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77% (378건)가 평가절차 없이 자의적·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 연장

<'10~'15년 갱신계약 시(공사·공단 제외 민간) 평가 실시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건)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소계	494(100%)	80	81	83	82	83	85
평가 실시	116(23%)	18	19	18	19	21	21
평가 미실시	378(77%)	62	62	65	63	62	64

□ 문제점

- 갱신계약 시 평가절차 없이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 해당업체는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반복될 경우 특혜 발생 소지
 - 또한, 수탁업체 입장에서 갱신계약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탈락 시 행정의 투명성 결여를 문제 삼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갱신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근거와 기준 마련

-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갱신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간 계약연장 등 특혜소지 차단
- 관리·운영능력, 위탁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한 수탁업체의 예측가능성 제고

-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계약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결정(5년 이내에 2회 이상 가능)「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공사는 '15년 계약이 종료되는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별다른 평가절차 없이 시의 재위탁 승인만으로 2년간 연장계약('16년 6월 권익위 실태조사)

2-2 갱신계약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 현 황

- 갱신계약 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주차장 조례 외 포함)가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17%(39개)이며,
 - 이해충돌방지 조항 7%(17개), 외부위원과반수 의무 조항 10%(24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39, 17%)							
		이해충돌방지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인원 하한선		위원장 공무원배제	
		○	×	○	×	○	×	○	×
235	196	17(7%)	22	24(10%)	15	31(13%)	8	6(3%)	33

- '10년~'15년 2회 이상 갱신계약 시 평가를 실시한 116건을 분석한 결과 91%(106건)가 평가위원회 구성 없이 자체평가로 실시

<'10~'15년 갱신계약 시(공사·공단 제외 민간) 평가단 운영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건)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16(100%)	18	19	18	19	21	21
위원회 평가	10(9%)	2	1	2	2	2	1
자체 평가	106(91%)	16	18	16	17	19	20

□ 문제점

- 평가방법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평가시마다 달리 정할 경우, 자의적 평가방법 결정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도 저하 및 특혜 발생 가능성 내재
 - 평가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구성 비율, 자격요건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곤란

□ 개선방안

○ 갱신계약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며, 다른 조례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활용도 가능
- **평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등**
 - 위원회 구성 시 자격요건, 내·외부 위원 구성 비율 명시, 이해 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으로 평가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

[사례] 공영주차장 평가 사례(○○시)

- (평가개요) 위탁주차장 지도·감독 계획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 의식 제고 및 시민 주차편의 증진을 도모
- (평가기관) ○○시 시설관리공단(주차장담당부서)
- (평가주체) 평가실무위원회 7명(공단 2, 시 2, 고객모니터 3)
- (평가분야)

구분	주요내용
친절도	◦ 불친절 민원, 주차요금징수 투명성, 성실도 등
관리체계	◦ 계약 및 지도 방침 이행, 지적사항 조치결과, 민원발생시 처리결과 및 개선의지
	◦ 관리 투명성, 주차관리원 지도감독 등

- (평가결과 활용) 세부기준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50점 이하) 등

※ '16. 7월 실태조사 시 해당 시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내용 재구성

※ 공유재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근거로 적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갱신계약의 판단근거로 활용한 사례임

2-3 주차장 조례 [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7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선안(예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현 행	개선안(예시)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개선안(예시) 제7조 제2항 후단의 ‘별표’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기준 등을 정성·정량지표로 구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갱신 여부 기준 등을 마련

3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관련 보도사례

- △ △ 구청이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을 '19년 5월까지 총 21년 6개월로 연장, 자체 감사결과 협약 변경 상 문제와 '97년~2012년까지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위탁운영 전반에 관리·감독 소홀 시인 [○○뉴스, '15. 4월]

■ 평가대상 조문 : 주차장 조례

▣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부재

▣ 조례 미제정 116개 지자체(49%)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생략)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3-1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관리 부실화 방지

□ 현 황

-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권을 규정한 자치단체는 51%(119개)에 불과
- 또한, 관리·감독 규정이 있는 119개 조례 중에서도 세부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는 33개에 불과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근거 조례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합계(개)	규정 없음	규정 있음(119, 51%)		
		주차장조례	민간위탁조례	기타
235	116(49%)	26	75	18

- '15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중인 176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5%(79개)의 지자체가 점검실적이 전무
- 또한, 97개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60개 지자체가 친절도·복장상태·서비스 품질 등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

<최근 3년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 지자체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년도	합계(개)	정기	비정기	미실시
2015	176	49	48	79
2014	171	46	42	83
2013	171	46	39	86

* 계획수립에 의한 실적만 인정

□ 문제점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불비(116개 지자체) 및 형식적 점검 등으로 인한 위탁관리 부실화 초래 및 부패가능성 증가
 -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활동이 법적 근거 없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될 경우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관리·감독이 미흡으로 수탁재산의 수입·지출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위탁료 산출이 어려워 위탁료 산출의 부실 초래

- 대부분 시설물 관리상태, 친절도, 복장상태, 요금표 적용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환경정비, 부당요금 징수 여부, 수익·운영시간·부당징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
- 일부 지자체만 주차장 수입·지출 상황, 분기별 운영실적 등 실질적 위탁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16.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방법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 (예시) 현장 출입·조사, 주차관제시스템, 장부 등 확인·조사 및 위법·부실운영에 대한 시정·주의·개선 요구 등
 - 수탁재산 관리상황(수입·지출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의무 규정
 - * 보고 주기와 보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

3-2 구체적인 제재규정 마련으로 수탁업체의 책임성 확보

관련 보도사례

- △△공사는 총 12개의 공영주차장을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는 십여 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 이들 수탁 민간단체들은 △△시와 △△공사가 주차장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세부자료 없이 총수입액과 총지출 금액만 적어 제출하거나 대부분은 아예 제출을 거부 [△△뉴스, '15.4월]

□ (현황)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해지·해제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는 54개(23%)에 불과

- 사유도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

□ (문제점) 수입·지출 상황 보고 거부, 위탁료 미납 또는 지연 납입 시에도 제재가 미흡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곤란

- '13년~'15년 기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8건이며, 대부분 시정, 주의, 경고 등에 그쳐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미흡

□ (개선방안) 수탁업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지(또는 해제) 조항 마련

- 관리상황 보고의무 거부(지연 보고, 거짓 보고 등), 위탁료 지연 납입 시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위탁료 횡령, 미승인 주차권 발행, 운영시간 외 영업,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의무 위반, 관리소홀 지적 개선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지자체 특성 및 실정에 맞춰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세부절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 [참고] 계약 해지(또는 해제)를 규정한 조례 —

- ○ ○ 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계약의 해제)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3 주차장 조례 [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현 행	개선안(예시)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00조제00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관련 보도사례

- △△공사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중 10개 주차장에 대한 재계약을 관행적으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이는 계약방식과 임대료를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심 행정용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 [○○일보, '15.1월]

□ 평가대상 조문 1 : 주차장 조례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수의계약 규정

■ 수의계약 근거 조례 제정 137개 지자체(58%)

제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군수가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이하 생략)

□ 평가대상 조문 2 : 주차장 조례

■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에 따라 ○○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②~③ (생략)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4-1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혜 시비 해소

□ (현황) 주차장 조례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 지자체는 137개(58%)

- '15년 기준 민간업체에 위탁중인 공영주차장 중 371개소(21%)가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방법 현황('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합계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	기타
합계(개소)	1,739	1,032	298	8	371 (21%)	30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1,256	676	248	6	301	25
지방공사·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483	356	50	2	70	5

□ (문제점) 조례에 수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특정 업체와의 장기 계약, 특혜 부여 등 문제 발생

-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 수탁업체로 선정하는 등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16.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수의계약 근거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명시

- 수의계약 근거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특정업체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수탁기관에 선정될 경우 투명한 위탁료 산출이 어려워 재정누수 가능성이 높고,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등 민간위탁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 초래

4-2 법령에 근거 없는 재위탁 규정 개선

-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08년부터 1년 단위로 '13년까지 △△시장 번영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면서 번영회가 제3자에게 5년 동안 재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해마다 공영주차장 지도·감독할 때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고, '13년 9월 번영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때 재위탁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탁한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13년 ○○시 감사결과보고서)

□ (현황) 주차장 조례에 재위탁 규정이 있는 지자체는 11개

- 10개 지자체는 재위탁 금지, 1개 지자체는 재위탁 허용

□ (문제점) 법령에 근거 없이 재위탁 할 경우 계약, 위탁료 산출, 관리·감독, 평가 등 위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위탁관리 전반의 부실 초래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금액을 당초 위탁금액 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약할 경우 최초 수탁자의 부당한 소득 발생 및 감독 기관과의 유착 발생 우려

□ (개선방안) 「주차장법」에 위배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 개선

- * 재위탁에 따른 재정누수 우려, 권한과 책임 소재 불분명, 관리·감독의 부실화 등을 방지

공영주차장 재위탁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재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재위탁을 위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 행정권한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설정되는 것(행정권한 법정주의)으로 재위탁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주차장법은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전문가 자문 결과

- 제3자에 대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 재위탁 조항이 없으면 엄격하게 해석하여 재위탁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또한 제3자 재위탁의 요건이 상위법에 규정됨이 없이 각 지자체 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되는 것은 결국 지자체 행정편의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에 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4-3 주차장 조례 [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의견4】 지방공사·공단에 민간위탁 수탁자 지위 부여

□ 관련 조문 :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현 황

- 「주차장법」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85개 지자체가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 중
- 174개 지자체가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위탁을 '민간위탁의' 범주에서 배제하도록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의견

-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위탁업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전문가 자문 결과

- 현재 '민간위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동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이때 '민간'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범위에는 사적 법인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특수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권고사항은 아니며, 업무추진 시 참고사항 임

V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 대상기관 : 235개 지자체(주차장 조례가 있는 지자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대상	조치기한
1. 위탁료 산출근거 및 세부기준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조례	235개 지자체 중 해당 지자체	'17. 11
2. 평가를 통한 갱신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7. 11
3.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 내실화			'17. 11
4. 수익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 개선			'17. 11

※ 조치기한 설정 : 조례 개정 1년 이하, 규칙 6개월 이하

※ 관련 규정개선은 주차장 조례(규칙)를 기본으로 하되, 민간위탁 조례(규칙), 공유재산 조례(규칙) 등의 연계성과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

개선권고(안) 조치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상 지자체
서울특별시(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17)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9)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인천광역시(11)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6)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6)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31)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도(18)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11)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15)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라북도(14)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22)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23)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18)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1)	제주특별자치도
계	235개 지자체

※ 조치대상 기관은 「주차장 조례」가 있는 지자체이며, 세부 개선권고 과제별 조치대상 여부 결정은 추후 지자체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확정할 예정임

붙임 1. 용어의 정리

◆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달라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본 평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 ▶ **(공영주차장)**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 **(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
- ▶ **(민간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 **(재위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
- ▶ **(갱신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과 계속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
※ 지자체에서 연장계약, 재계약, 재위탁 등의 용어로 사용 중
- ▶ **(위탁기관)** 자기의 권한(책임)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
- ▶ **(수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 **(재위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 **(재수탁기관)** 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무를 재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붙임 2. 자치법규 개정시 유의사항

-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
- ▶ 본 평가서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예시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이 「민간위탁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주차장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주차장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주차장 조례」에 관련 근거를 명시
 - ※ 관련 조례의 규정이 본 개선권고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당 조례를 개정
- ▶ 본 평가서는 「주차장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예시하였으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법적 체계에 맞춰 관련 내용을 '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음

붙임 3.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안내사항

- 공직자등이 아닌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
-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붙임 4.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 안내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 법 제31조에서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붙임 5. 「주차장 조례」 개선 표준안

< △ △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장의 표지)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6조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분</th><th>선정 방법</th><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th>납부 방법</th></tr><tr><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td><td>(생략)</td><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td>(생략)</td></tr><tr><td>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td><td>(생략)</td><td>계약금액</td><td>(생략)</td></tr></table>	구분	선정 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 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생략)	시장이 정하는 금액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생략)	계약금액	(생략)	제6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개월마다 ○○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구분	선정 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 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생략)	시장이 정하는 금액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생략)	계약금액	(생략)														
제7조 <신설>	제7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신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년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9조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 <신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신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3조 <신설>	제13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신설>	제14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 한다.
제15조(주차장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 처분)	<현행과 같음>